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-25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10.

발의자 : 김동수 의원 외 8 명

1. 개정이유

-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'교류협력사업의 범위'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제화에 필요한 기관·단체·기구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방안 신설(안 제6조, 안 제7조)
-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등 국제 교류도시와의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'내실화'를 도모하고, 국제 교류도시 재해·재난 시 국제사회에 걸맞는 인도주의 실천부분 신설(안 제11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등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(비용추계서)

7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8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 5(부서검토의견서)

[붙임 1]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,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, 제6조, 제7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교류협력사업의 범위)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외 도시와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
2.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
3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
4. 기타 시장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 및 지원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國內外 기관·단체·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·입 관련 활동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

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(내실화)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,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,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동수 대표발의 (행정 3583)

[붙임 2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교류협력사업의 범위)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외 도시와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상호 이해증진 또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2.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업 3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4. 기타 시장이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협력 및 지원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·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·입 관련 활동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</p> <p>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u>제6조 (생 략)</u>	<u>제8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</u>
<u>제7조 (생 략)</u>	<u>제9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</u>
<u>제8조(교류 및 통상사업의 지원)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경제, 사회, 교육, 문화, 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교류사업을 추진하거나, 기업 또는 개인이 외국기업 또는 개인과 수출·입 관련 활동 시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9조 (생 략)</u>	<u>제10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</u>
<u><신 설></u>	<u>제11조(내실화)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과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등에서 재난,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의료지원반을 파견하거나 성금,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<u>제10조 (생 략)</u>	<u>제12조 (현행 제10조와 같음)</u>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8-258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. 10. 25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수정이유

- 교류협력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사업 위탁의 대상을 제한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교류협력사업 위탁 대상 중 민간단체를 삭제 함(안 제7조)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7조제3호 중 “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”를 “비영리법인”으로 한다.

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〈신 설〉	제7조(협력 및 지원) ①~②(생략) ③ 시장은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<u>비영리법인</u> 이나 <u>민간단체</u> 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	제7조(협력 및 지원) ①~②(개정안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비영리법인 ----- -----.